

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6월 08일

행정안전부장관

1. 신청인(연장)

법 인 명	산이건설 주식회사 (대표 고희운)
법인등록번호	201411-*****
소 재 지	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

2. 기술명 :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기술

3. 기술내용(요약)

- 2중 강상자를 구성하고 지점부에 충전콘크리트를 채워 구조적 일체화가 되도록하여 교량의 강성을 증가시켜 저형고 장경간화를 도모한 기술

4. 기술범위

- 콘크리트 충전재를 이용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 기술

5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(특)한국방재협회(☎02-3472-8072, 김진호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라. 제출처 :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(☎ 044-205-4187, 정진경)

(특)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(☎ 02-3472-8072, 김진호)

1) 전자우편 : filmle@korea.kr, kjh85@kodipa.or.kr

2) 팩스번호 : 044-205-8901

3) 주 소

-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17-2동 709호 행정안전부(재난안전산업과)

-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(강동구 성내동 447-9) 한국방재협회